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업적평가 및 임용 내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신대학교 「교원인사 규정」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규정」에 따라 재계약임용대상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하 “비정년교원”이라 한다)의 업적평가와 심사, 재계약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 비정년교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조(업적평가) ① 비정년교원의 업적평가는 교원업적평가 규정을 준용한다.

② 업적평가의 영역은 연구, 교육 및 봉사영역으로 하되, 규정으로 명시되지 않은 업적은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업적평가대상기간) ① 교원업적평가는 2년 단위로 실시한다. 단, 위원회의 결의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② 타 기관 소속으로 근무한 기간에 발표한 실적은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휴직 및 정직 기간 동안의 업적평가 점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4조(업적평가절차) ① 비정년교원은 평가대상기간의 업적에 대한 평가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지정기일 내에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무처장은 증빙자료와 개인별 평가조서 기재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항목별 평점을 기재한 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무처장은 위원회에서 평가된 결과를 평가대상기간 종료 후 90일 이내에 해당교원에게 통보한다.

제5조(업적심사) ① 재계약임용대상자의 업적심사는 교원업적평가규정을 준용하며 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② 업적심사는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른 업적평가결과와 평정표를 근거로 한다.

제6조(업적심사절차) ① 재계약임용 심사대상자는 심사대상기간의 업적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를 재계약임용 신청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

② 위원회는 심사대상 교원의 업적평가결과와 평정표를 제출받아 심사한 후 교원업적종합평정표를 작성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장 재계약 임용

제7조(재계약임용 최소요건) ① 재계약임용 심사대상자는 심사대상 기간 중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라 평가된 업적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영역별 충족조건을 달성해야 하며, 재계약임용 여부는 심사에 의해 결정한다. 단, 외국인 교원의 재임용기준은 원어민 교원에 한해서 적용되어 심사한다.

1. 강의전담 교원(비정년)

심사대상 기간	영역별 최저평점		
	교육업적	연구업적	봉사업적
최근 2년	80	100	60

2. 연구전담 교원(비정년)

심사대상 기간	영역별 최저평점		
	연구업적		
최근 2년	200		

3. 외국인교원(비정년):대상은 원어민에 한하고 외국인 교원 인사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름

② 제1항의 재계약임용 최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재계약임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임면권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계약임용을 할 수 있다.

③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에 의해서 임용기간을 2년을 초과하여 임용계약한 경우에는 본 내규 제7조 제1항의 최소요건 점수를 임용기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며 부득불 2년 미만으로 계약한 경우도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한다.

제8조(재계약임용 여부의 통지) ① 임면권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계약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계약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면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에 대한 재계약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계약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재계약임용 심의) ① 재계약임용대상자에 대한 심의는 본 내규와 「교원업적평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된 평점을 근거로 하며, 최소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한 경우 재계약임용 심의대상이 될 수 있다.

② 교원인사위원회가 재계약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별지의 교원임용평정표의 업적평가결과 등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심의한다.

제3장 승진임용

제10조(승진임용) ① 본 대학교에서 조교수로 6년 이상을 근무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부교수 승진 대상이 된다.

② 승진의 시기는 교원인사규정 제28조를 준용한다.

③ 승진심사대상자는 승진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승진의 최소요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승진은 모든 항목에서 업적별 승진 승진 최소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영역별 업적 실적물 최적평점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 외국인 교원의 승진임용기준은 원어민 교원에 한해서 적용되어 심사한다.

1. 강의전담 교원(비정년)

심사대상 기간	영역별 최저평점		
	교육업적	연구업적	봉사업적
최근 6년	300	400	240

2. 연구전담 교원(비정년)

심사대상 기간	영역별 최저평점
	연구업적
최근 6년	700

3. 외국인교원(비정년): 대상은 원어민에 한하고 외국인 교원 인사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름

제12조(승진임용 심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승진임용 심의는 제11조의 규정의 승진 최소요건 외에는 교원인사규정 및 교원업적평가 규정을 준용하여 심의한다.

제4장 기 타

제13조(정년트랙 전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동일 전공 분야의 정년트랙 전임교원 신규채용 절차에 따라 트랙을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업적평가가 현저히 탁월하거나 학교 발전을 위한 업적이 뛰어날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별도의 심사를 거쳐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정한 지침이나 대신대학교 각종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내규의 개폐) 이 내규의 개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와 교무위원회의 승인을 거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내규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내규의 적용은 2024년 3월 1일 이후 임용계약자부터 적용한다.